

의안번호	제2969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69호
----------	--------

제출연월일: 2025. 7. 4.
제출자: 고성군수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 이유

여성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와 직업훈련 교육, 활동공간 제공 등을 위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시설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시설의 사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검토결과: 의견없음[복지지원과-18305호(2025.05.13.)]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896호
 - 가) 예고기간: 2025. 5. 12. ~ 6. 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7. 4.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이하 “담소랑”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소랑은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에 둔다.

제3조(기능) 담소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경제자립을 위한 기술·취업 교육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담소랑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강당
2. 교육실
3. 공유사무실
4. 아이돌봄실
5. 사무실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담소량의 사용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일 야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을 하나만 적용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 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시설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이나 사용 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강사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군수는 담소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및 수강료(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사용료	다목적강당	1회, 2시간	20,000원	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교육실 1		10,000원	
	교육실 2		15,000원	
	공유사무실		무료	1일 1회만 이용가능
수강료	8시간 이하	1시간 50분 수업 기준	10,000원 이하	
	16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40시간 이하		50,000원 이하	

※ 시설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시간으로 본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범위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고성군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강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전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가구원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사용료	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5일 전	전액	
			사용일 1일 전	100분의 50	
			사용일	100분의 30	
	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	
			사용일	남은 사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강료	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전	100분의 60	
			총 수업시간의 1/2 이전	100분의 50	
			총 수업시간의 1/2 이후	100분의 30	
		수강료 징수기간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와 나머지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전액
				수업시작 이후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시설 사용 및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사 용 신 청	사용일시		사용공간										
	주 소		연 락 처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수 강 신 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강좌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집항목(필수)</th> <th>수집항목(선택)</th> <th>수집목적</th> <th>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td> <td>단체명</td> <td>의사소통, 정보전달 및 고지서발급</td> <td>사용 종료후 보유정보 폐기</td> </tr> </tbody> </table>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및 수강 신청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수집항목(필수)	수집항목(선택)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단체명	의사소통, 정보전달 및 고지서발급	사용 종료후 보유정보 폐기
수집항목(필수)	수집항목(선택)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단체명	의사소통, 정보전달 및 고지서발급	사용 종료후 보유정보 폐기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요인: 시설유지관리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 소요예산: 금72,000,000원
 - 시설유지관리비: 1,000,000원 × 12월 = 12,000,000원
 - 프로그램 운영비: 6,000,000원 × 10월 = 60,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